#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

2022. 9.

관계기관 합동

## 목 차

| │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
|--|
| □. 보이스피싱 대응방안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비대면 계좌개설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오픈뱅킹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원격제어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여신금융회사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기존 대응수단 강화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Ⅲ. 향후 추진계획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참고1] 현행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12                      |
| [참고2]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13              |

## │. 추진배경

- □ 정부와 금융권의 **보이스피싱 대응노력**\*으로 피해자가 범죄자 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**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**은 **감소** 
  - \*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, 지연인출제,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
- □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**새로운 유형의**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
- ① (대면편취)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

< 보이스피싱 건수·피해액(경찰청) >

<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(경찰청) >





- ② (비대면 계좌개설)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**피해자 명의의**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,
  - (오픈뱅킹) 오픈뱅킹 가입 후,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
- □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는 **보이스피싱 엄단**을 **국정과제**로 발표하고 **대응**\*
  - \*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,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·대응센터 설립 중
  - 이에 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한 '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'을 마련
    - 특히, **디지털 환경의 취약점**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할 필요

## Ⅱ. 보이스피싱 대응방안

##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

#### 1.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 적용

- □ (문제점)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「통신사기피해화급법」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불가
  -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,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 등에 따라 **사기이용계좌**\*를 **지급정지** 
    - \*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·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전에 이용된 계좌
  - **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**은 전기통신금융사기<sup>\*</sup>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여도 **신속한 지급정지**가 **불가능** 
    - \* 자금을 송금·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·이체하는 행위
    - 검거한 조직원을 수사하는 도중 **다른 공범이 피해금**을 **인출**
- □ (대응방안)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**피해구제**가 될 수 있도록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을 추진
  - \*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
  - **수사기관**\*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, 금융회사에 **지급정지**를 **신청** 
    - \*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·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
    -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하여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
  -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,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
  - **선의의 계좌명의인**을 **보호**하기 위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도 적용

#### 2.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

- □ (문제점)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등 범죄에 활용
  -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(1회 입금 한도 100만원)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 가능
    - 일부 ATM기기는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나, **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**를 입력하더라도 **입금 가능**
  - ②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
- □ (대응방안)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
  - **1**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(1회 100만원 → 50만원)
    - 전체 송금·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\*은 매우 낮고, 실수요자는 50만원 단위로 나누어서 입금 가능
      - \* 국민·기업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 수단별 송금·이체 비중('22.1분기, %): (모바일)71.01, (인터넷)14.59, (ATM매체)10.46, (텔레뱅킹)2.17, (창구)1.41, (ATM무매체)0.36
    - 반면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(수거책)에 대한 **검거**\*는 **증가**할 것으로 예상
      - \*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통장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
  - **2**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**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**(1일 300만원\*)를 **신규 설정** 
    - \*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.6%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
    - ATM 매체(통장·카드) 입금, 창구,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 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
    - 반면,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집금 과정은 크게 불편

## 2 비대면 계좌개설

#### 1.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

□ (문제점)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이 신분증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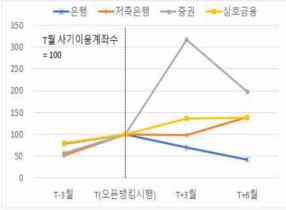
<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>

| .   112   23             | , 12 3 2 .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무 (2개 이상)               | 권고 (1개 이상)             |
|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            |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       |
| ② 영상통화                   | (인증서, I-Pin, 휴대폰 인증 등) |
|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       |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        |
| ④ <b>기존계좌 활용</b> (1원 송금) | (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등)      |
|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(생체인증 등)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(참고2)을 활용하지않는 금융회사\*는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
  - \* 신분증의 문자정보(주민등록번호, 발급번호 등)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취약
  - 특히, 중·소형 증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활용이 저조
  - 오픈뱅킹 참여 시, 해당 업권을 활용한 사기이용계좌가 증가
    - \* ('20.12월) 증권사, 상호금융 ('21.4월) 저축은행
      - < 업권별 사기이용계좌 수 >

< 사기이용계좌 수 추이(오픈뱅킹 참여=100) >





2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신분증 도용여부는 검증 불가

- □ (대응방안)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
  - ① '신분증 사본 제출'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(금융결제원)으로 진위여부를 검증
    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'신분증 사본 제출' 방식은 사용 불가<sup>\*</sup>
      - \* 이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外 2개 이상의 실명확인을 거칠 필요 : (예시) 영상통화 + 기존계좌 활용
  - ②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,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(개발 예정)을 활용 가능
    -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**낮은 인식률**로 인한 소비자 불편\* 등이 있을 수 있어, 일정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
      - \*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→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(추가) → 1원 송금

#### 2.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

- □ (문제점) 1원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사례가 발생
  - ① 일부 금융회사는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**인증번호**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(7일~14일)
    - 대포통장 구매자가 ID·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<sup>\*</sup>을 확보
      - \* (대포통장 유통업자) 비대면 계좌개설이 진행중인 대포폰과 1원송금 인증 번호를 판매 → (대포통장 구매자)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설정 : 1~2일 소요
  - ② 피해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본인계좌로 도착한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전달
- □ (대응방안)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비
-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**입력 유효기간**을 최대 **15분 이내로 단축**
- 2 1원 송금 시, '계좌개설용'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

## 3 오픈뱅킹

#### 1. 피해규모 축소

- □ (문제점)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**알뜰폰을 개통**하고 계좌를 개설한 범죄자는 **오픈뱅킹**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므로,
  - 직접 자금을 이체하지 않은 **피해자**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**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**
- □ (대응방안)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
  - ① (일정기간 활용 제한)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\*
    - \* 소비자는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 가능
    - 금융결제원은 **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** 해당고객의 **이용** 한도\*를 축소(1일 이용한도 : 1천만원 → 300만원)
      - \*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,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
  - ② (이상거래 탐지강화)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    - 금융회사는 同시스템과 FDS(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)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차단

#### 2.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

- □ (문제점) 범죄자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송금·이체 하는 범죄에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
  - 직접 자금을 송금·이체한 피해자는 **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**를 통해 범죄 피해금이 이전된 **모든 계좌**의 **자금이전**을 신속하게 차단
  - 그러나 범죄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해자가 **본인명의** 계좌의 자금이전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

- □ (대응방안)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
  - ① (오픈뱅킹 가입제한)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\* (금감원) 등록 시,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 연결을 제한
    - \*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시, 계좌개설·대출·카드발급을 제한
  - ② (본인계좌 지급정지) 피해 발생(우려)시,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/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    - (1단계) 피해자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어카운트인포)에서 명의도용 계좌 개설여부를 확인하고, 지급정지 신청
    - (2단계) 피해자가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 가능

## 4 원격제어

- □ (문제점) 피해자가 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한 후 원격조종 앱을 통해 범인이 오픈뱅킹 가입·자금이체
  - \* 피해자에게 원격조정앱 설치 유도 → 범인이 원격조정 앱을 실행하고 미리 받은 신분증 사진,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필수정보 입력 후 오픈뱅킹 가입
  - 금융회사 앱 구동 시 **원격조정 앱 연동**을 **차단**하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, 이를 **차단하지 않은 금융기관**이 존재
- □ (대응방안)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,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
  - **디지털 취약계층 지원**을 위한 경우,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과의 연동은 허용되나,
    - 이 경우에도 계좌개설·자금이체·대출신청 등 거래 관련 기능은 반드시 차단

## 5 여신금융회사

- □ (문제점)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적용대상이 아닌 카드사등은 주로 해드폰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
  -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의 앱 카드 발급 후, **카드론**을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
- □ (대응방안) 여신금융회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,
  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(금융결제원)을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를 적용

## 6 기존 대응수단 강화

#### 1.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강화

- □ (문제점)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수준도 낮으며,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
  - 현재 보이스피싱(전기통신금융사기)은 「형법」 상 사기죄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에 해당하며,
    -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제15조의2는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\*을 처벌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('14.1.28.)
      - \*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
  - **단순 조력행위**(피해금 송금·인출·전달 등)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

- □ (대응방안)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
  -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'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\*'을 부과하고,
    - \* 「자본시장법」§443조의 미공개정보 이용, 시세조종 등과 동일
    -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'을 부과
  - o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

#### 2. 보이스피싱 예방제도 설명 강화

- □ (문제점) 고객 선택으로 적용 가능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를 운영 중이나, 활용이 저조
- □ (대응방안) 계좌 개설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가입 의사를 확인

#### - 〈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〉----

- ① (지연이체) 일정 금액(예: 100만원) 이상 이체시 이체요청 이후 일정 시간(최소 3시간)이 경과 후 입금되는 서비스(입금 30분 前 취소가능, 창구 거래 未적용)
- ② (입금계좌지정)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(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)만 가능(창구거래 未적용)
- ❸ (단말기 지정서비스) 미리 지정한 PC,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만 공동 인증서발급, 이체 등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(최대 5개)

### 3. 홍보활동 강화

- □ (문제점) 여러 관계기관이 다양한 홍보활동 중이나 진화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
- □ (대응방안) 옥외전광판 등 기존의 홍보채널 외에 웹 드라마 등 경각심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\* 활용
  - \* 계층별·범죄수법별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·방영 등

## Ⅲ. 향후 추진계획

- ① **법 개정**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**의원입법을 추진**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
- 2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
- ③ 금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

   여러 방안\*을 지속 보완
  - \* 예)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의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금융 업자(선불충전업자)에 대한 대책 등

< 세부 추진계획 >

과제내용 추진계획 관계기관 1.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▶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개정안 발의 17 피해구제절차 적용 총괄기획단 협의 ('22.10월) ②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● 입금한도 축소 ▶ 금융회사 내규 개정·시스템 개발 금융회사 ('22년, 일부 금융회사는 '23.上) 2 수취한도 신설 2. 비대면 계좌개설 ①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▶ 금융회사 시스템 구비 ('23.9월) 금융회사 ●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 확대 ▶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은행과 ('23.上)

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▶ 시스템 개발 ('23.下)

▶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('23.上)

금융결제원

은행과

2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

① 인증번호 유효 기간 단축

② 계좌개설 표기

▶ 시스템 개발 ('22년)

금융회사

| 과제내용                   | 추진계획   | 관계기관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3. 오픈뱅킹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① 피해규모 축소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① 이체·출금 제한<br>(3일)     | <ul><li>▶ 시스템 개발 ('23.上)</li><li>▶ 시스템 개발·오픈뱅킹 규정 개정 ('23.上)</li></ul> | 금융회사<br>금융결제원 |  |
| ② 이상거래 탐지<br>강화        | ▶ 시스템 개발 ('22년)  | 금융결제원         |  |
| ②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● 오픈뱅킹 가입<br>제한        | ▶ 시스템 개발 ('22년)  | 금융회사          |  |
| ❷ 본인계좌 지급정지<br>(1단계)   | ▶ 시스템 개발 ('22년)  | 금융결제원<br>금융회사 |  |
| ❷ 본인계좌 지급정지<br>(2단계)   | ▶ 시스템 개발 ('23.上)   | 금융결제원<br>금융회사 |  |
| 4. 원격제어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원격조종 앱 차단              | ▶ 시스템 구축·점검 ('23.上)  | 금융회사<br>금융보안원 |  |
| 5. 여신금융회사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본인확인 강화                | <ul><li>▶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 ('23.上)</li><li>▶ 금융회사 시스템 구비 ('23.9월)</li></ul> | 여전협회<br>금융회사  |  |
| 6. 기존 대응수단 강화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 ① 처벌강화                 | ▶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개정안 발의<br>협의 ('22.10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괄기획단         |  |
| ② 보이스피싱 예방<br>제도 설명 강화 | ▶ 설명자료 준비('22년)  | 금융회사          |  |
| ③ 홍보활동 강화              | ▶ 강화된 홍보활동 시행('22~23년)   | 금융감독원<br>금융회사 |  |

## 참고1 현행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

#### 1. 피해예방

- ① (지연인출·이체) 100만원(1회) 이상 입금(송금·이체 등)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·이체 발생 시, 30분간 거래를 지연
- ② (지연이체서비스) 수취인 계좌에 **일정시간**(최소 3시간) **경과** 후 입금되며, 입금 **30분**前 **취소 가능**(창구거래 未적용)
  - ※ 건별한도(최대100만원)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이용가능
- ③ (입금계좌지정서비스)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 (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)만 가능(창구거래 未적용)
- ④ (해외IP차단서비스) 국내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 차단
- 5 (은행전화번호진위확인서비스) 은행에서 고객대상으로 전화· 문자 발송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

#### 2. 피해 확산방지 및 구제

- ① (임시조치) 금융회사 자체점검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 이체·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
- ② (지급정지)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·이체 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
- ③ (전자금융거래제한)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
- ④ (채권소멸·피해금환급)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환급
- 5 (전화번호이용중지)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
- ⑥ (금융회사에 대한 조치) 금융위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권고·요구·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
  - ※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견책 또는 감봉, ②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인력·전산 시설·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

## **참고2 │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**

□ 창구, 모바일 등을 통해 제출된 신분증의 **문자**와 **사진 정보**를 **신분증 발급기관**\*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**진위여부를 확인** 

\* ('14.8월)행안부 ('15.7월)경찰청 ('17.1월)비대면 ('20.12월)외교부 ('22.12월')법무부

< 업무처리 절차 >



- 1 고객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금융회사에 신분증 제출
- 2 금융회사는 제출된 신분증 스캔 후, 진위확인에 필요한 정보 추출

| 신분증   | 발급기관  | 추출 정보   |
|-------|-------|---|
| 주민등록증 | 행정안전부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, <b>사진특징점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전면허증 | 경찰청  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면허증번호, 발급일자, <b>사진특징점</b>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권    | 외교부   | 성명, 여권번호, 발급일자, MRZ(Machine Readable Zone),<br><b>사진특징점</b> |

- 3 금융회사는 추출한 진위확인 정보를 결제원에 전송
- ④ 결제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신한 진위확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(이하'행공') 전문으로 변환 후 행공에 전송
- **⑤** 행공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진위확인 정보를 신분증 발급 기관별로 전송
- **6** 신분증 발급기관은 수신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비교 검증
- ₹ 신분증 발급기관은 진위확인 결과정보를 행공에 전송
- 3 행공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수신한 진위확인 결과정보를 결제원에 전송
- ② 결제원은 행공으로부터 수신한 진위확인 결과정보를 금융회사 전문으로 변환 후 금융회사별로 전송
- ➡ 문자정보와 사진정보를 모두 비교함으로써 위·변조 검증에 효과적